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6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8일 공포)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법률로 상향 조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5조, 제6조)을 「중

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54조의7, 제54조의8, 제54조의9, 제54조의10, 제54조의11)

나. 법률로 상향조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관련 내용 삭제(안 제41조의2, 제43조)

3. 의견제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행정 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541, Fax : 042-472-7929)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및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6 다음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54조의7을 제54조의12로 하고, 제3장제9절에 제54조의7부터 제54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7(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62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4조의8(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 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7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의7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제54조의9(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8에 따른 신용보증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다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4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4조의11(운영세칙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 및 제43조는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지도사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2.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삭 제>
제43조(지도사의 업무 범위)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 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삭 제>

및 확인 7.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 소재 개발, 시제품 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 분석, 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 생산관리기술,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환경경영의 진단·지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		

<신 설>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 설>	제54조의7(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① 법 제62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건축물 전체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로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2.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제조시

	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② 법 제62조의7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 설>	제54조의8(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 면적 등) ① 법 제62조의7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면적은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는 공장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62조의7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의 확인은 그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

	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표시된 상시 종업원 수에 따른다.
<신 설>	제54조의9(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62조의8에 따른 신용보증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차관보 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7.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10. 「은행법」에 다른 은행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나. 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나 기관의 장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중소기업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 마. 그 밖에 중소기업 또는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0호 및 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54조의10(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 설>	제54조의11(운영세칙 등) ① 위원회

	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4조의7 (생 략)	제54조의12 (현행 제54조의7와 같음)